

# 의 정 정 보

---

2005 - 21 11. 25

## 목 차

---

I. 중앙기관 정보	1
II.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되는 주요내용	9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부 록</span> : 행복한 책 읽기	22

# I. 중앙기관 정보

## 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지난 11. 21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 신설

- 지난 7. 27 실시된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 도(道)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혁신안이 채택됨에 따라
  -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 이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등에서 타 시·도와는 다른 행정체제·기능 및 자치권능을 부여받고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행·재정상 특례를 인정받게 되어 제주도에 한해 타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른 법적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현 행	개 정 안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②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개선
  -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수가 지역에 관계 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의 제정 및 폐쇄 청구 발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지자체별 연서 주민수 : 서울 14만명(1/50), 울릉군 370명(1/20)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및 폐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 시·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 시·군·구는 19세 이상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 ③ 조례안 작성권 및 소명기회 부여

-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폐쇄를 청구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 청구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청구각하시 소명 기회가 없어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폐쇄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④ 청구인 명부 공표·열람기간 조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제·폐쇄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동안 열람토록 하여 열람기간이 짧아 주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과 충분한 열람기회 부여를 위해 공표일(접수한 날로부터 5일)과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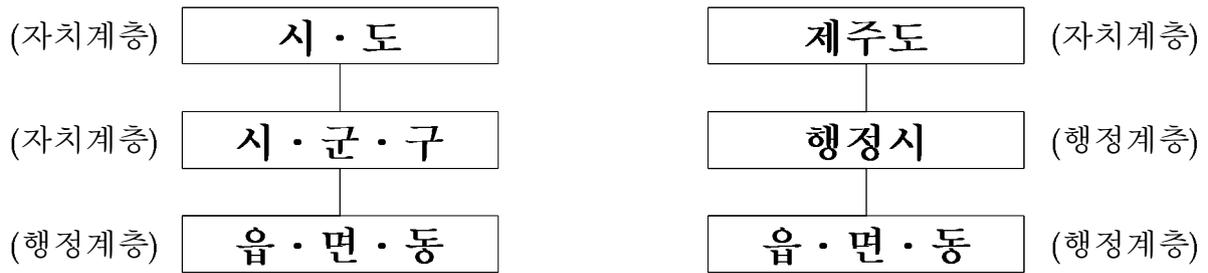
**<참 고> :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규 정	개 선 내 용
청 구 요 건	· 1/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시군구 : 1/50~1/20 · 시도·50만이상시 : 1/100~1/70 ※ 기준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
조례안 작성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청구인 대표
청구권자 자격	· 20세 이상의 선거권자	· 19세 이상의 선거권자
공표시기 열람기간	· 공표시기 : 청구 접수즉시 · 열람기간 : 7일	· 공표시기 : 청구 접수후 5일이내 · 열람기간 : 10일

## ②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 확정

- 정부는 11. 21 국무회의에서 제주도를 道 단일의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 금번 특별법은 지난 7. 27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한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제주도내 시군을 폐지하여 제주도를 道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 그에 따른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 구축,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설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 현행 1도 4시·군인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설치하고 그 명칭과 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 행정시에 두는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임명방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함으로써 공직 내외로부터 능력 있는 전문가가 충원되도록 하였고
      -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다.

## <행정계층 비교>



- 아울러 시·군 폐지에 따른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정화 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였다.

### ②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 현재 제주도의 도의원 정수는 19명(지역 16, 비례 3)이나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대표성의 약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정수를 35명으로 확대하였다.
- 제주도의회 구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35명 이내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소지역주의를 방지하고 능력있고 참신한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특히, 적정규모의 의원정수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그 권한도 강화하였다.

※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규정 없음

③ 시·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 배제장치 마련

- 시·군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상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폐지되는 시·군 소속 공무원을 제주도 소속공무원과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였다.

**<공선법상 국회·광역·기초의원 관련규정 및 제주도의원 비교>**

구 분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제주도의원
의 원 정 수	총정수	법률(299명)	규정 없음	시도별 총정수 범위내에서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시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	35인 이내에서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규정
	지역정수	법률(243명)	법률 규정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비례정수	규정 없음	지역구의 10%	총정수의 10%	총정수의 20%이상에서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규정
선 거 구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선거구확정위원회 확정안을 존중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규정
선 거 구 정 위 회	구성	국회 구성	없음	시도 구성	제주도 구성
	권한	선거구획정안 제출(존중)	-	시군구별 정수 확정, 선거구 획정안 제출	정수·비례대표·선거구 확정

**<참고 1> : 제주도와 기타 도의 행정체제 등 비교**